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00호 2023. 2. 22.(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28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311호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
거창군 공고 제2023-31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거창군 공고 제2023-314호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5
거창군 공고 제2023-323호	보 상 계 획 공 고	31
거창군 공고 제2023-324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35
거창군 공고 제2023-335호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3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22.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수유길 238-92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가.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선제적 대응
- 나.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도모

3.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등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나.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제10조)
- 다. 유치활동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1조)
- 라. 이전공공기관 부지매입비 등 일부 지원(안 제12조)
- 마. 이전공공기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제13조)
- 바. 이주직원 이주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등 지원(안 제14조)
- 사.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안 제15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3. 2. 20. ~ 3. 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3. 13.(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전략담당관

2) 전화 055)940-3702, 팩스 055)940-3679, 이메일 djpark2013@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전략담당관 행정의료타운담당

【☎(055)940-37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 산하기관, 교육연수 및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대학 등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지원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유치 공공기관등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등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동 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1명은 군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고충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건축비, 임대료(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이전비용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대부료의 감면)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제7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이사비용
4. 그 밖에 이주직원이 군에 이주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기관등 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707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 7. 20.] [대통령령 제31897호, 2021. 7. 20., 타법개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초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79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 표] <개정 2020. 5. 19.>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 삭제 <2011.12.31>
3. 한국천문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서 용자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 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용자할 수 있다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46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삭제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소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 삭제(안 제4조·별표 2)
 - 1) 근거: 제6조에 근거하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준용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179), 이메일(wadi1004@korea.kr)
- 라. 제출기한 : 2023. 3. 13.(월) 18:00까지 도달
- 마.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 바. 문의전화 : 055-940-3193

-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u> <u>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u> <u>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u> <u>다.</u></p>	<p><u><삭 제></u></p>

<삭 제>
[별표 2]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와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 활성화
- 나.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활동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안전보안관 활동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안 제4조·제7조)
- 마.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3. 2. 22. ~ 3. 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3. 14.(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 2) 전화 055-940-3634, 팩스 055-940-3629, 이메일 khj1386@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055)940-36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되 40명 이내로 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안전교육
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3. 성인지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 대표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조정 등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대표단의 운영 등) ① 대표는 대표단을 대표하고 대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단의 회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3조제9호의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보 상 계 획 공 고

가조면 마상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가조 거창성당 가조공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2023. 2. 22.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가조 거창성당 가조공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나.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47.0m, B=6.0m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3. 보상시기 : 별도 보상통보

4.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현금 지급한다.

(감정평가 업자선정 : 사업시행자가 2인 선정, 토지소유자 추천시 별도 1인선정)

5. 보상절차

가) 토 지 : 보상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 제출 후 보상

나) 지장물 : 철거후 보상금 전액 지급

6. 보상계획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보상계획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055-940-3593)

8. 이의신청 :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

【별첨 1】 토지조서(사업시행에 따른 편입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현실	공부	대장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8필지			14,107	1,396		10명			
1	가조면 마상리	236-11	답	답	173	156	-	거창군			
2	가조면 마상리	236-2	도	도	340	67	-	국 (농수산부)			
3	가조면 마상리	235-5	답	답	99	14	-	거창군			
4	가조면 마상리	233-6	답	답	573	11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7, 302동 602호 (봉림동, 엘에이치피닉스포레)	이영한			
5	가조면 마상리	233-9	답	답	364	13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485	최태균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8길 32-25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6	가조면 마상리	230-2	전	전	969	13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29	박석재			
7	가조면 마상리	230-1	대	대	559	75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35, 304동 403호(삼계동, 구지마을3단지푸르지오아파트)	신정재			
8	가조면 마상리	288	대	대	641	146	경상남도 마산시 완월동 206	재단법인 마산교주 천주교회 유지재단			
9	가조면 마상리	229-4	대	대	176	11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29	박석재 (지분 1/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29-1	이한길 (지분 1/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4길 45-25	김영순 (지분 1/3)			
10	가조면 마상리	229-5	대	대	277	1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4길 45-25	김영순			
11	가조면 마상리	861-2	도	도	8,347	108	-	국 (건설교통부)			
12	가조면 마상리	223-1	대	대	233	12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2길 72-96	이종배 (지분 1/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8길 32-25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2길 72-96	이제경 (지분 1/2)			
13	가조면 마상리	223-2	대	대	42	42	-	거창군			
14	가조면 마상리	223	대	대	290	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24	대한예수 교장노회 가조교회			
15	가조면 마상리	222-6	대	대	43	1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24	대한예수 교장노회 가조교회			
16	가조면 마상리	222-5	대	대	104	104	-	거창군			
17	가조면 마상리	222-7	대	대	3	3	-	거창군			
18	가조면 마상리	222-2	도	도	874	23	-	거창군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거창군청에서 시행하는 『가조 천주교 가조공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추천 감정평가업자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소유자

연번	성 명	주 소	면적(㎡)	날인(서명)
1				
2				
3				
4				
5				
6				
7				

2023. . .

거창군수 귀하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웅양면 동호리 일원에 추진 중인 「군도25호선 (보광,성북) 확·포장공사」의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 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거창군수

1. 도로의 명칭 : 군도25호선

2.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3. 7.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군도25호선 (보광,성북) 확·포장공사	경남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웅양면 동호리	도로 확포장 L=1.8km B=8.0m	거창군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열람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기간
거창군청 건설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층)	2023. 2. 22. ~ 2023. 3. 7.(14일간)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 2. 22. ~ 2023. 3. 7.(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055-940-355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240,707.8	41,091					
1	웅양면 동호리	산77-1	구	413	413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웅양면 동호리	385-1	답	693	271		거창군			
3	웅양면 동호리	384-2	도	185	10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304	유동출			
4	웅양면 동호리	384-4	답	775	775		거창군			
5	웅양면 동호리	392	답	112	112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6	웅양면 동호리	400-5	임	569	302		거창군			
7	웅양면 동호리	400-4	답	1529	902		거창군			
8	웅양면 동호리	401-1	답	334	266		거창군			
9	웅양면 동호리	402-1	답	305	239		거창군			
10	웅양면 동호리	403-1	답	424	271		거창군			
11	웅양면 동호리	404-1	답	348	247		거창군			
12	웅양면 동호리	405	답	803	201		거창군			
13	웅양면 동호리	406-8	답	1074	467		거창군			
14	웅양면 동호리	406-2	묘	280	280		거창군			
15	웅양면 동호리	408	답	734	734		거창군			
16	웅양면 동호리	1410	구	260.5	41		농림축산식품부			
17	웅양면 동호리	1399-1	답	1183.6	838.2		거창군			
18	웅양면 동호리	산76-1	구	1884	143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19	웅양면 동호리	382-1	구	21	21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0	웅양면 동호리	382-4	답	534	534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05-1 신호월더하임아파트 108-504	임영길			
21	웅양면 동호리	384-5	답	2,473	2,473		거창군			
22	웅양면 동호리	1299	구	21,764	307		농림축산식품부			
23	웅양면 동호리	400-1	임	66	66		거창군			

입원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4	용양면 동호리	산65-2	임	913	456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 17, 금호서한이다음 105동 102호	이강욱			
25	용양면 동호리	406-7	답	1,748	719		거창군			
26	용양면 동호리	406-6	구	47	47		거창군			
27	용양면 동호리	409-1	구	408	114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8	용양면 동호리	409-4	답	271	24		거창군			
29	용양면 동호리	1307	도	1,055	197		국토교통부			
30	용양면 동호리	산60-7	임	1,343	189	부산시 연제구 봉수로 25, 힐스테이트연산 204동 1704호	이내영			
31	용양면 동호리	1306	도	937	60		국토교통부			
32	용양면 동호리	1399-1	답	1,183.6	838.2		거창군			
33	용양면 동호리	1400	답	1,123	53.4		거창군			
34	용양면 동호리	1399	답	847.1	75.8		거창군			
35	용양면 동호리	1397	답	1,932	80.1		거창군			
36	용양면 동호리	1409	도	1,905.5	465		농림축산식품부			
37	용양면 동호리	1407	구	649.1	113.5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38	용양면 동호리	산85	임	43,564	84		거창군			
39	용양면 동호리	산86	임	1,787	20		거창군			
40	용양면 동호리	산87	임	4,264	11		거창군			
41	용양면 동호리	1298-2	구	943	115		농림축산식품부			
42	용양면 동호리	1280	도	1,586	249		농림축산식품부			
43	용양면 동호리	1278	구	1,999	112		농림축산식품부			
44	용양면 동호리	1277	도	528	39		농림축산식품부			
45	용양면 동호리	489-9	답	1,149	1,149		거창군			
46	용양면 동호리	1274	구	6,023	289		농림축산식품부			
47	용양면 동호리	487-4	과	1,895	704		거창군			
48	용양면 동호리	487-3	답	1,641	764		거창군			

입원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49	옹양면 동호리	472	답	1,250	1,250		거창군			
50	옹양면 동호리	471-9	답	1,430	358		거창군			
51	옹양면 동호리	1256-1	도	3,887	867		농림축산식품부			
52	옹양면 동호리	1306	도	837	224		국토교통부			
53	옹양면 동호리	산60-4	구	606	3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54	옹양면 동호리	428-1	구	164	25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55	옹양면 동호리	1396-1	답	60.6	60.6		거창군			
56	옹양면 동호리	1396	답	1,589.5	1,589.5		거창군			
57	옹양면 동호리	1395-1	답	942.6	520.3		거창군			
58	옹양면 동호리	1395	답	1,725.6	400.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16, 907동903호(중산동,중산마을)	이두환			
59	옹양면 동호리	1394	답	1,537.1	148.7		거창군			
60	옹양면 동호리	335-6	답	906	906		거창군			
61	옹양면 동호리	503-1	답	2,160	543		거창군			
62	옹양면 동호리	489-6	답	1,055	159		거창군			
63	옹양면 동호리	489-7	답	1,229	243		거창군			
64	옹양면 동호리	489-8	답	1,387	437		거창군			
65	옹양면 동호리	488-1	답	1,727	17		거창군			
66	옹양면 동호리	1256-3	도	783	80		농림축산식품부			
67	옹양면 동호리	487-5	답	1,859	437		거창군			
68	옹양면 동호리	487-2	답	1,204	575		거창군			
69	옹양면 동호리	487-1	과	1,437	688		거창군			
70	옹양면 동호리	1256-4	구	89	33		농림축산식품부			
71	옹양면 동호리	473	답	1,425	1,425		거창군			
72	옹양면 동호리	1256-2	구	1,142	85		농림축산식품부			
73	옹양면 동호리	471-6	답	1,469	85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72번길 6-8	이운연			

입원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74	옹양면 동호리	471-7	답	1,914	176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72번길 6-8	이운연			
75	옹양면 동호리	471-8	답	1,594	243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76	옹양면 동호리	471-11	답	1,054	302		거창군			
77	옹양면 동호리	471-12	답	1,306	585		거창군			
78	옹양면 동호리	1256-5	도	552	70		농림축산식품부			
79	옹양면 동호리	1274-1	구	559	16		농림축산식품부			
80	옹양면 동호리	1248-1	구	2,102	72		농림축산식품부			
81	옹양면 동호리	465-1	답	1,294	47		거창군			
82	옹양면 동호리	333	도	1,931	57		농림축산식품부			
83	옹양면 동호리	464-8	답	2,325	268		거창군			
84	옹양면 동호리	464-7	답	2,069	234		거창군			
85	옹양면 동호리	464-6	답	1,770	228		거창군			
86	옹양면 동호리	464-5	답	958	144		거창군			
87	옹양면 동호리	464-4	답	536	86		거창군			
88	옹양면 동호리	464-3	답	507	78		거창군			
89	옹양면 동호리	464-2	답	511	6		거창군			
90	옹양면 동호리	464-11	답	96	66		국토교통부			
91	옹양면 동호리	464-9	답	2,235	2		국토교통부			
92	주상면 남산리	840-7	답	35	35		거창군			
93	주상면 남산리	834-7	답	102	102		거창군			
94	주상면 남산리	1339	도	1,369	202		국토교통부			
95	주상면 남산리	835-7	도	17	8		거창군			
96	주상면 남산리	835-1	도	136	10		백용주			미등기
97	주상면 남산리	836-4	답	1,330	1,330		거창군			
98	주상면 남산리	835-8	답	345	345		거창군			
99	주상면 남산리	831-4	답	683	683		거창군			

입원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00	주상면 남산리	835-4	도	8	4		거창군			
101	주상면 남산리	831-3	도	14	14		거창군			
102	주상면 남산리	1325	구	54,533	1,144		농림축산식품부			
103	주상면 남산리	831-1	도	36	36		백학술			미등기
104	주상면 남산리	834-6	답	68	68		거창군			
105	주상면 남산리	834-4	도	243	243		거창군			
106	주상면 남산리	1083-1	답	196	196		거창군			
107	주상면 남산리	834-2	답	580	580		거창군			
108	주상면 남산리	1081-3	답	14	14		거창군			
109	주상면 남산리	1084-1	도	33	33		거창군			
110	주상면 남산리	1084-2	답	56	56		거창군			
111	주상면 남산리	1081-2	답	5	5		거창군			
112	주상면 남산리	1085-1	도	66.	66		거창군			
113	주상면 남산리	1085	답	291	291		거창군			
114	주상면 남산리	834-5	도	20	20		거창군			
115	주상면 남산리	1340	도	2,317	56		국토교통부			
116	주상면 남산리	1086-1	답	128	128		거창군			
117	주상면 남산리	1087-1	대	14	1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1087	수원백씨의립의직형제종중			미등기
118	주상면 남산리	1103-1	답	130	130		거창군			
119	주상면 남산리	1105	전	2,261	474		거창군			
120	주상면 남산리	1106-2	전	425	425		거창군			
121	주상면 남산리	1109-1	임	320	320	서울시 관악구 인현17길 3(봉천동)	백원재			
122	주상면 남산리	1355	구	463	463		국토교통부			
123	주상면 남산리	1101	답	350	350		거창군			
124	주상면 남산리	1110	답	307	307	사정 (거창읍 학리)	백인기			미등기

입원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25	주상면 남산리	1108-1	전	398	398		거창군			
126	주상면 남산리	1111	답	152	152	사정	백한기			미등기
127	주상면 남산리	산72-1	임	1,271	1,271		거창군			
128	주상면 남산리	1112	전	208	208		거창군			
129	주상면 남산리	1086	답	64	6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1 상동주공아파트 106-1504	백동욱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까지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복지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1) 주소 : (우 510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2) 전화 055-940-3132, 팩스 055-940-3089, 이메일: speak80@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055-940-3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의료급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총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 3. 27., 2008. 3. 3., 2010. 3. 19., 2012. 11. 21.>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 일용잡급, 국내여비, 교육비, 수용비, 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 12. 31.>